

인물정보 가이드라인

2014. 12.

인물정보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취지

인물정보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동시대 국내외 주요 인물들의 프로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 하듯 관심 인물을 검색을 통해 탐색할 수 있는 인물정보 서비스는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가 동시대 주요 인물들에 대한 프로필 정보의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 주목하여, 관련 정보의 수집을 비롯한 등록, 수정, 노출, 그리고 삭제에 이르는 서비스 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인물정보 서비스 전 과정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원칙은 인물정보 주체의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용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인물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합리적인 서비스 운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물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회적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인물정보 서비스의 세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등록과 수정, 노출, 삭제 등 전 과정에 걸쳐 합리성, 중립성, 정확성, 안전성, 차별금지, 과잉수집금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등의 세부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자 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지난 1년간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의 논의의 산물로 만들어졌다. 인물정보 주체의 권리보호와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이라는 대원칙은 인물정보 서비스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관철되는 기본 전제이지만 세부 영역의 기준과 원칙은 법제도나 사회 및 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의 과정을 거쳐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I. 인물정보 등록

1. 인물정보 등록

가. 인물정보 등록의 원칙

○ 인물정보 등록의 원칙은 크게 기본원칙, 대상선정의 원칙, 정보수집의 원칙, 인물등록의 원칙으로 구분되며, 다시 기본원칙은 필요성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으로, 대상선정의 원칙은 연령기준의 원칙, 직업기준의 원칙, 직위/경력 기준의 원칙으로, 정보수집의 원칙은 절차적 정당성, 과잉수집금지의 원칙, 사생활침해 최소화 원칙으로, 인물등록의 원칙은 개별등록의 원칙, 생존자 우선의 원칙, 정확성, 안정성, 최신성의 원칙으로 분류 가능

나. 기본 원칙

○ 필요성의 원칙

- 필요성의 원칙은 인물정보 등록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원칙을 의미하며, 인물정보 등록의 목적 내지 필요성은 이용자 검색요구라는 이용자 필요성과 검색편의성 제고 및 공익적 필요성을 그 내용으로 함

- 따라서 인물정보 등록은 인물검색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인물검색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은 인물정보 등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므로 인물검색 서비스의 필요성이 없는 인물정보 등록은 무의미하므로 인물정보 주체가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물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음

○ 중립성의 원칙

- 인물정보 등록에 있어 중립성의 원칙이란 어떤 가치 판단이나 주장에 편견을 가지지 않아야 하므로 어떤 특정한 정치적 견해 및 사상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차별금지의 원칙

- 차별금지의 원칙은 인물정보 등록 시 성별, 인종, 국가, 종교 등을 이유로 인물

정보 등록을 거부하거나 제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함

- 차별금지의 원칙이 “인물”을 중심으로 성별, 인종, 국가,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면, 중립성의 원칙은 “인물정보”를 중심으로 그 내용의 주장이나 가치판단에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함을 의미

다. 대상선정의 원칙 : 어떤 인물을 등록할 것인가의 문제

o 연령기준의 원칙

- 어떤 인물을 등록할 것인가를 연령을 기준으로 성년자는 당연히 등록 대상이 될 것이나 성년이 아닌 경우 등록 대상의 연령을 19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4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인물정보가 대부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연령기준인 14세를 기준으로 하여도 큰 문제가 없고, 인물정보 등록 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로 보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연령 기준을 14세를 기준으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여짐
- (예외) 다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도 아역스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과 같이 화제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호자인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o 직업기준의 원칙

- 인물정보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상 직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직업이 없는 경우 인물정보서비스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예외) 표준직업분류상 직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TV등 언론에 기사화되고 대중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물정보에 등록될 수 있음

o 경력 및 직위 기준의 원칙

- 인물정보에 등록되는 인물은 그 직업에 있어서 일정한 경력, 직위(직급)를 필요로 하며, 경력이 있는 경우 직위(직급)를 먼저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삼되, 경력이 없거나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직위(직급)를 알 수 없거나 그러한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력기간을 보충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함
- (예외) 일정한 경력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갑자기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TV행사에 갑자기 출연하여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경우 화제의 인물로 보아 인물정보에 등록될 수 있음

라. 정보수집의 원칙

○ 절차의 정당성

- 정당성이란 법령 또는 사회통념으로 미루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며, 인물정보 수집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란 인물정보 수집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당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단·방법이 정당해야 함을 의미함
- 인물정보의 수집 절차는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반대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수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함

○ 과잉수집금지의 원칙 : 인물정보 수집 정도의 문제

- 인물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보호법」 내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됨
- 그러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수집이라 하더라도 인물정보의 수집은 인물검색서비스 제공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되어야 함

○ 사생활침해 최소의 원칙

- 인물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야 함. 다만, 수집되는 인물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일반인 또는 담당자가 판단하기 매우 곤란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
- 인물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인물정보의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을 미리 판단하여 법적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마. 인물등록의 원칙 : 수집된 인물정보의 등록 문제

○ 개인별 등록 원칙

- 개인별 등록 원칙은 인물정보는 자연인으로서 개인에 대한 인물정보를 의미하므로 1개인에 대한 하나의 정보를 등록하여 인물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1인 1등록 원칙으로 볼 수 있음

- (예외) 수인이 1개인처럼 인식되는 경우, 즉, 여러 명이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여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명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생존자 우선의 원칙

- 생존자 우선의 원칙은 인물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인물은 살아있는 개인 또는 개인들의 그룹이어야 하는 것을 말함
- (예외) 사망자의 경우에도 최근 사망으로 인하여 애도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 사망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 반복적인 추모가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이용자의 검색이 발생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인물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됨

○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의 원칙

- 인물정보는 네이버가 이용자를 상대로 제공하는 정보이므로 정보자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① (정확성) 정확성이란 그 인물과 제공되는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인물정보 서비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② (완전성) 완전성이란 인물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려는 항목의 정보가 모두 갖추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일부 정보가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정보 수집의 한계로 인해 제공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제공하는 정보가 이름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불완전한 정보로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③ (최신성) 최신성이란 그 인물의 최근 동향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인물정보 검색서비스는 다른 경쟁사업자도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서비스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에 대한 현재 상황을 끊임없이 추적하여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인물정보 등록 원칙

- 인물정보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많아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인물정보 등록의 원칙은 상당한 부분에서 일치함

[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인물정보 등록의 원칙

구분	개인정보 보호 원칙	인물정보 등록의 원칙	
1	처리목적 명확화, 수집제한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기본원칙
2	처리목적 적합처리/목적외 활용금지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3	정보 내용 정확성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4	안전성 확보의 원칙	연령기준의 원칙	대상선정의 원칙
5	공개, 개인참여의 원칙	직업기준의 원칙	
6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경력/직위기준의 원칙	
7	익명처리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	정보수집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과잉수집금지의 원칙	
9		사생활침해 최소의 원칙	
10		개인별 등록의 원칙	인물등록의 원칙
11		생존자 우선의 원칙	
12		정확성 · 안전성 · 최신성의 원칙	

II. 인물정보 직업 분류체계

1. 인물정보 분류체계의 개념

○ 네이버의 인물정보 직업 분류는 인물정보서비스에서 직업정보에 대해 배열 또는 구분 하기 위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의미함

2.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 포괄성의 원칙

-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예외 없이 특정한 직업으로 반드시 분류되어야 함. 네이버의 인물 정보 직업분류는 소분류(가장 최하위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되는 소분류가 없을 경우 가장 포괄적인 대분류에 분류함

○ 일관성의 원칙

- 직업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항목 간의 계층 및 항목을 정의하는 방법 등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함

○ 상호배타성의 원칙

-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는든 동일한 하나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하며 여타의 직업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가능한 적어야 함

○ 등록필요성의 원칙

- 이용자의 직업 추가 요구 시 상업적 목적 및 다양한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등재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분류 체계 내에서 가능한 직업으로 분류하게 함. 새로운 직업의 등록이 필요한 경우, 표준직업분류의 직업예시와 소분류에 기반하여 가장 유사한 직업으로 분류하여 등록함

○ 이용자 편의성의 원칙

- 네이버의 인물정보서비스에 노출되는 직업은 인물정보의 활용도와 노출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이용자 니즈 중심의 분류체계를 지향함

3. 분류 기준

- 인물정보 본인이 요청한 직업분류를 존중하도록 하고, 네이버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직업의 등재요청이 있을 경우, 네이버의 직업분류체계 내에서 가능한 직업으로 분류하도록 함

4. 분류 절차

- 인물정보 본인이 신청한 직업정보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네이버의 직업분류체계에 따라 소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되는 분류가 없을 경우 가장 포괄적인 대분류에 분류함
- 인물정보 본인에 의하여 새로운 직업의 등록을 요청한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표준직업분류를 확인하여 직업예시와 소분류에 기반하여 가장 유사한 직업을 등록함. 이때 새로 추가된 직업은 즉시 네이버 직업분류표에 추가 및 개정 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Ⅲ. 인물정보 노출

1. 인물정보 노출의 기본원칙

○ 인물노출 대상 및 방식

- 인물노출은 인물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예인 직군으로 등록할 경우 그룹으로 등록 가능하고, 각 그룹은 1인 이상의 개인과 연동되어야 함

2. 인물정보 노출의 기타 원칙

○ 동명이인의 처리 관련

- 다수의 동명이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물정보의 노출 순서와 UI 형태는 사용자의 관심도 및 인지도, 검색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출 가중치 로직에 의하여 자동 반영됨

- 선거나 올림픽 등 국가적인 특수한 사건 및 행사 발생 시 관계 인물에 대한 정보의 노출은 기존의 인물정보가 아니라 외부 공식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함.

○ 본인 제공 정보와 실제 사실이 다른 경우의 처리 등

- 본인이 제공한 정보와 실제 사실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노출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출 제어가 가능함.

Ⅳ. 인물정보 수정

1. 인물정보 수정의 개념

- 인물정보 수정이라 함은 제공되고 있는 인물 정보에 오류 및 수정사항이 발생했

거나 당사자가 인물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 경우 내용 수정 및 부분 삭제 등으로 인해 정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함

2. 인물정보 수정의 원칙

- **주체성의 원칙** : 인물정보 등록 권한을 가진 주체(본인, 관계자 등)가 수정을 요구하면 이를 반영해야 함
- **최신성의 원칙**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이력 정보 등)의 경우, 이용 편의성과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장 최신의 내용으로 인물정보 수정이 가능함
- **정확성의 원칙** : 인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미흡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된 정보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인물정보 수정이 가능함

3. 인물정보 수정이 가능한 경우

- 제공되는 인물정보 내용이 틀렸을 경우(시점 오류 등), 시간 경과 등에 따라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승진, 이직, 은퇴 등), 정보 주체가 특정 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을 경우,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경우(프로필 사진 등) 인물정보 수정이 가능함

4. 인물정보 수정 권한

- 본인과 대리인, 팬 등 제3자, 네이버 CS 등이 인물정보 수정 요청 권한을 가지며 권한의 범위는 본인과 대리인이 가장 광범위함

5. 인물정보 수정 가능 내용

- 생체 정보와 과거 이력 정보 등 불변하는 고정형 정보는 부분 삭제(해당 항목 공란 처리)만 가능하며 업데이트 정보(키, 학력, 경력 등)와 선택형 정보(사진, 활동 사이트 등) 등 가변형 정보는 내용 변경과 부분 삭제가 모두 가능함

6. 인물정보 수정에 관한 예외 적용

- 수정 요청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과장된 경우, 수정 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공인의 개인정보 수정요구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와 관계된 사안인 경우 등은 즉시 처리하지 않고 보류 후 검증단계를 거치거나 검증위원회 심의 등

을 거쳐 처리 가능함

V. 인물정보 삭제

1. 삭제의 기본원칙

○ 삭제란 인물정보 등록 사이트에서 등록 자체를 말소하여 영구적으로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본원칙으로 다음 3가지를 설정할 수 있음

- 첫째, 인물정보 자기결정권의 원칙은 인물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만큼 인물정보주체 즉 본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삭제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임

- 둘째, 인물정보 필요성의 원칙은 인물정보의 등록이 국내외 공인 및 유명인 등 주요인물의 프로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인물정보 이용 활성화라는 인물정보 검색문화의 발전이라는 공공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삭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임

- 셋째, 신속삭제의 원칙은 등록의 필요성이 소멸되거나 또는 인물정보 본인이 등록 삭제를 요청할 경우 등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삭제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함

2. 삭제 기준

○ 이에 따른 삭제의 기준은 본인 삭제 의사, 등록 필요성의 소멸, 본인의 공익위배 행위를 들 수 있음

- 등록 필요성의 소멸은 등록 당시부터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등록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본인의 공익위배행위는 본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반사회적 행위가 있거나 인물정보를 악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인물정보 서비스의 존재가치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3. 삭제 절차

- 삭제 절차는 본인의 신청이나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삭제로 나눌 수 있음
- 제3자가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 존중 차원에서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
- 직권삭제의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충족 등 4가지 경우로 한정하여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는 본인의 이의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함. 특히 삭제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삭제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통지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4. 삭제의 범위 및 재등록 여부

- 삭제는 원칙적으로 등록사항의 전부를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인물정보의 수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수정절차로 이행하여 처리함. 삭제 이후의 재등록은 일정기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것을 보임